



콘텐츠제작에 관한 내규

제정일	2008. 1. 1
개정일	
개정차수	차
담당부서	미디어센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내규는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미디어센터 콘텐츠제작 및 관리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미디어센터” 라 함은 본교 미디어센터로 규정한다.
- ② “수용자” 라 함은 본교 구성원으로 규정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 4조 (심의의 방법)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특별히 방송광고에 대하여서는 방송되기 전에 그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 5조 (심의의 기본원칙) ① 위원회는 저작자의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심의를 할 때는 저작자의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이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6조 (방송 및 신문 발행의 공적책임) ① 미디어센터는 수용자가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 ② 학생들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신장 및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④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⑤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⑥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 ⑦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⑧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⑨ 수용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⑩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 ⑪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⑫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제 2 장 일반 기준

기타 일반 내용에 대한 심의 규정은 방송윤리 위원회 심의 규정과 인쇄물 및 출판물 심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심의 절차

제 7조 (제재조치) ① 규정 위반에 의한 제재조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위반일시
2. 위반사실
3. 제재조치 명령의 내용
4.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 방법
5. 재심청구 기간·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정보의 제공자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을 권고 받은 제공자는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 8조 (시정명령) 위원회는 미디어센터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1. 미디어센터가 규정에 의한 제재 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하는 경우
2. 미디어센터가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 광고물을 편성하여 방송하는 경우

제 9조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 방송주체는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사자등의 의견 진술) ①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거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을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연속 프로그램 등) 위원회는 연속 프로그램이나 주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수회의 방송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의 존중) 미디어센터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 결과 제조치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 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미디어센터에 대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